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들에게 외교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교수(임기 4년) → 부교수(임기 5년) → 교수(65세 정년 보장)의 직위변경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교수 → 교수의 직위변경 시 예규상에는 직위변경제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과 예규간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의 교수 채용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정비(제4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우수한 근무실적이 인정되어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u>교수</u> 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u>다수인</u> 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① ----- ----- ----- ----- ----- ----- ----- <u>우수</u> <u>한 근무실적이 인정되어 교수로</u> ----- <u>해당 부</u> <u>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임용심</u> <u>의위원회의 심의</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국립외교원 기획부 기획협력과	
연 락 처	(02) 3497 - 7631